

전자상거래협정

서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이하 “당사자들” 이라 한다)은

WTO 협정에 따른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정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 조치를 채택하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창출하는 기회를 재확인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증진하는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 및 사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디지털 격차를 더욱 좁히고, 글로벌 경제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기업, 소비자 및 근로자에게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혜택과 기회를 향상시키기로 결의하며,

개발도상국과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특별한 요구와 향상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그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적 개발 도구로서 전자상거래의 잠재력과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된 집단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상호운용성, 혁신, 경쟁 및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절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제1조
적용범위

1.1. 이 협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1.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다. 제8조, 제9조 및 제12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조치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위원회”란 제28.1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국가”란 이 협정의 당사자인 모든 개별 관세 영역을 포함한다. 이 협정의 당사자인 개별 관세 영역의 경우, 이 협정의 표현이 ‘국가’라는 용어로 한정되면, 그러한 표현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 관세 영역에 관한 것으로 해

석된다.

- 다. “분쟁해결양해”란 WTO 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 라. “기업”이란 지점,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 마. “GATS”란 WTO 협정 부속서 1나에 규정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 바. “1994년도 GATT”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규정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 사.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아.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자. “소상공인·중소기업”이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말한다.
- 차.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 카.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적용 가능한 경우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를 포함하여, GATS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 타. “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체결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3.1 당사자들은 WTO 협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이 협정이 이를 수락하지 않은 WTO 회원국들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의무를 창출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GATT 또는 GATS 각각의 당사자의 양허표에 기재된 시장 접근 약속을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¹

제2절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4조 전자거래 체계

4.1 각 당사자는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2 각 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나. 전자거래를 위한 자신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예외에도 적용된다.

4.3 당사자들은 전자양도성 기록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2017)을 고려한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²

5.1 이 조의 목적상,

- 가.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 나. “전자서명”이란 전자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그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2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 법적 유효성 또는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서의 허용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5.3 어떠한 당사자도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전자인증 방법 또는 전자서명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전자인증 또는 전자서명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전자 데이터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표시하거나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더 큰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5.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 또는 전자서명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5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전자 인장, 전자 시점확인(time stamp) 및 전자등기배달서비스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5.6 당사자들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5.7 당사자들은 전자서명의 상호 인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다.

제6조 전자계약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전자계약³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근거만으로 그 계약의 법적 효력, 법적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제7조 전자송장

7.1 이 조의 목적상,

가.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송장을 처리하고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포함한다.

나. “전자송장 체계”란 전자송장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2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송장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송장의 법적 효력이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서의 허용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7.3 당사자들은 전자송장 체계가 전자상거래 거래의 비용 효과성,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7.4 당사자가 전자송장 체계와 관련된 조치를 개발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는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조치가 국경 간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도록 설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5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전자송장과 관련된 우수 관행을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종이 없는 무역

8.1 이 조의 목적상,

가. “관세당국”이란 당사자의 법에 따라 자신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나. “전자적 형식”은 디지털화된 이미지 또는 형태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해석 및 전자적 처리에 적합한 모든 형식을 포함한다.

다. “증명서류”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당사자의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제출된 정보를 뒷받침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말하며,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또는 송금 내역서와 같은 문서를 포함할 수 있다.

8.2 상품 무역을 위한 종이 없는 국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요구되는 종이 양식 및 문서를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종이 양식 및 문서를 제거하고 데이터 기반 형식의 양식 및 문서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권장된다.

8.3 각 당사자는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자신의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자신의 관세 당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양식을 대중에게 전자적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8.4 각 당사자는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자신의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자신의 관세 당국 외의 모든 정부 기관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양식을 대중에게 전자적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8.5 어떠한 당사자도 반대되는 국제적인 법적 요건이 있는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8.6 각 당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양식의 전자적 형식으로서의 제출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8.7 각 당사자는 전자적 형식으로 제출된,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자신의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자신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자신의 관세당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양식 및 적절한 경우 증명서류를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8.8 각 당사자는 전자적 형식으로 제출된,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자신의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자신의 관세당국 외의 모든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자신의 관세당국 외의 모든 정부 기관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양식 및 적절한 경우 증명서류를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8.9 어떠한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 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가. 반대되는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법적 요건이 있는 경우, 또는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자신의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통관 또는 그 밖의 무역 절차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게 될 경우

8.10 각 당사자는 제9항가호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종이 양식의 목록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그러한 목록을 갱신하도록 노력한다.

8.11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전자적 양식 및 문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 포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8.12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전자적 양식 및 서류의 활용에 대한 국제 표준의 사용이 무역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 기구의 표준 또는 그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단일창구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상호운용성

9.1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규정된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제10조제4.1항에 따라 자신의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할 때,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자신의 모든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대하여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자신의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또는 데이터의 전자적 제출이 단일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9.2 당사자의 단일창구는 자신의 영역에 도착 시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전에 정보 처리를 시작하도록, 가능한 경우 서류 또는 데이터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9.3 자신의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할 때, 각 당사자는

가. 적절한 경우 세계관세기구 데이터 모델 또는 데이터 요소에 대한 그 밖의 국제 표준을 통합하도록 노력한다.

나. 그 밖의 단일창구와의 데이터 교환이 허용되는 경우 언제나, 교환되는 데이터의 보호 및 기밀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다. 개별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참조번호 또는 그 밖의 신원 확인 도구를 이행하도록 권장된다.

9.4 단일창구가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관세당국과 통합되지 않은 경우, 제3항은 적절한 경우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당사자의 영역을 통한 통과에 관련된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통관 관리 시스템에 적용된다.

9.5 제3항과 제4항에 더하여, 당사자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단일창구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데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나.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 요소 및 통관 절차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9.6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여 단일 창구로, 또는 단일창구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통관 관리 시스템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노력한다.⁴

제10조

전자지급

10.1 이 조의 목적상,

가.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인에 대한 금전상 청구권의 이전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공급자 간의 결제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지급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⁵ 그리고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당사자가 단일창구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신의 영역에 설립되지 않은 다른 당사자의 전자지

- 나. “자율규제기구”란 당사자에 의하여 자율규제기관으로 인정되고, 그 당사자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전자지급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을 말한다.

10.2 전자지급, 특히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에 주목하며, 당사자들은 다음을 인정한다.

-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을 강화하고, 전자지급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며, 전자지급 서비스의 유용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비용 부담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국경 간 전자지급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의 유익함
- 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비용 부담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전자지급 제품 및 서비스의 시의적절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 다. 적절한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비용 부담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시스템의 위험을 고려하는 법과 규정을 통하여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10.3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제18조에 더하여, 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대한 자신의 법과 규정을 시의적절하게 공개한다.
- 나. 규제 승인 또는 면허 승인에 관한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완료한다.

다. 관련 전자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지급 시스템 간의 더 큰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급 표준을 고려한다. 그리고

라. 전자지급 서비스 공급자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전자지급에서 더 큰 상호운용성, 경쟁, 보안 및 혁신을 촉진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적절한 위험관리를 조건으로 한 제3자 제공자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할 수 있다.

10.4 GATS에 대한 자신의 약속에 관한 양허표(“양허표”)에 규정된 모든 제한 또는 조건에 따라, 전자지급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급형태 3(상업적 주재) 공급에 대하여 자신의 양허표에 약속한 각 당사자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에 접근⁶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⁷

10.5 제4항에 언급된 약속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 항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0.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GATS에 따라 구체적 약속을 하지 않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당사자에 요구하지 않는다.

10.7 제18조에 더하여, 각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자율규제기구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0.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면허나 허가를 취득할 필요성 또는 접근 신청의 승인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3절

개방성 및 전자상거래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급 및 청산 제도에 대한 접근은 다음을 통하여 허용될 수 있다: 가. 직접 접근, 또는 나. 당사자의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직접 접근이 가능한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통한 간접 접근

⁷ 이 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한 GATS를 참조하여 이해된다.

제11조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11.1 이 조의 목적상, “전자적 전송”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하며 그 전송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11.2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T/L/274)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인정한다.

11.3 어떠한 당사자도 한 당사자의 인과 다른 당사자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은 당사자가 WTO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11.5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술의 진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일 후 5년이 되는 해에 그리고 그 후 주기적으로, 이 조의 영향과 어떠한 개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한다.

제12조

정부 데이터 공개⁸

12.1 이 조의 목적상, “메타데이터”란 콘텐츠, 형식, 출처, 권리, 정확성, 기원, 빈도, 주기성, 세분성, 발행자 또는 책임 당사자, 연락처 정보, 수집 방법 또는 문맥과 같은, 데이터에 관한 구조적 또는 서술적 정보를 말한다.

12.2 이 조는 당사자의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지 않으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지식재산권 및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당사자의 법을 저해하지 않는다.

며, 당사자가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 데이터(이하 “정부 데이터”라 한다)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12.3 당사자들은 지역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12.4 당사자들은 정부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발전, 경쟁력 및 혁신을 강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장된다.

12.5 당사자가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하여 정부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데이터가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기계 판독이 가능하고 공개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할 것

나. 검색 및 불러오기가 가능할 것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시의적절하게 갱신될 것

라.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에 기반한 메타데이터를 수반할 것, 그리고

마. 비용 없이 또는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것

12.6 당사자가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하여 정부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는 그러한 데이터의 이용자가 다음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 데이터를 재생산, 재배포 또는 재공표하는 것

나. 그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것, 또는

다.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그 데이터를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⁹

12.7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장려하고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행과 정책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

13.1 이 조의 목적상, “최종이용자”란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독하는 인을 말한다.

13.2 당사자들은 각자의 영역 내 최종이용자가 다음의 능력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익을 인정한다.

가. 불공정한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인터넷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최종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합법적인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¹⁰

나. 최종이용자가 선택한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다.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대한 투명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그러한 데이터의 이용자에게 원 출처로의 링크 연결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¹⁰ 이 호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자신의 최종이용자들에게만 특정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이 원칙에 불합치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하고 명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13.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그 항에 규정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치를 채택, 개정 또는 유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4절 신뢰 및 전자상거래

제14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4.1 이 조의 목적상, “오도하고 사기적이며 기만적인 상업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사실에 대한 묵시적 허위 표시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가격, 목적에 대한 적합성, 수량 또는 원산지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 표시¹¹ 또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
- 나. 공급할 의도나 합리적인 능력 없이 공급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
- 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달하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 라.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

14.2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확신과 신뢰를 강화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

¹¹ 이 조의 목적상, “중대한 허위 표시”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행위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허위 표시를 말한다.

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¹²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오도하고 사기적이며 기만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14.3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가.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와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
- 나. 모든 구매 조건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 다. 상품의 안전과, 적용 가능한 경우,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중의 서비스의 안전

14.4 당사자들은 다른 형태의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부여된 수준 이상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4.5 당사자들은 상호 결정된 경우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권리 침해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포함하여 각자의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4.6 각 당사자는 국경 간 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구제 또는 청구수단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및 인식을 증진한다.

제15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¹² 이 조의 목적상,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은 전자상거래의 거래 전(前) 단계를 포함한다.

15.1 이 조의 목적상,

- 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최소한 전자우편과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다른 유형의 전자 메시지로 구성되는,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인의 전자 주소¹³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 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발송되는 상업적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15.2 당사자들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제한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공급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 나.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15.3 각 당사자는 상업용 전자 메시지가 그 자체로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그 메시지가 누구를 대신하여 발송되었는지 명확히 밝히며, 수신자가 언제든지 무료로 그러한 메시지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5.4 각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피해구제 또는 청구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15.5 당사자들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¹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의 전자 주소”는 IP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16조

개인 데이터 보호

16.1 이 조의 목적상, “개인 데이터”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16.2 당사자들은 개인 데이터 및 관련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확신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16.3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¹⁴

16.4 각 당사자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자신의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관련 국제기관 또는 국제기구가 개발한 원칙과 지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6.5 각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자신의 법 체계가 자연인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미차별적인 보호를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6.6 각 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자연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16.7 당사자들이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이러한 상이한 제도 간의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해

¹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사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법, 개인 데이터 보호법,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 또는 사생활 침해를 다루는 그 밖의 법과 같은, 조치 또는 조치들의 조합을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을 준수할 수 있다.

야 할 것이다.

16.8 제7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은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약정으로 부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규제 결과에 대한 인정 또는 광범위한 국제적 체계를 포함할 수 있다.

16.9 당사자들은 각자의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제7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 사이버보안

17.1 당사자들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17.2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사이버 위협의 진화하는 특성을 인정한다. 사이버 위협을 적발하고 경감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각자의 국가 기관의 역량을 구축한다. 그리고

나. 당사자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의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며, 사이버보안 사고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그 인식에 대한 정보와 우수 관행을 공유하는 데 협업한다.

17.3 사이버 위협의 진화하는 특성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며, 당사자들은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면서 그러한 위협을 다루는 데 위험기반 접근방식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보호하며, 사이버보안 사건을 적발하고,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응하며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위험 관리 우수 관행과 합의에 기반하여 투명하고 개방된 방식으로 개발된 표준에 의존하는 위험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관할권 내 기업에게도 그 사용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제5절
투명성, 협력 및 개발

제18조
투명성

GATS 제3조 및 1994년도 GATT 제10조에 더하여,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늦어도 그 조치의 발효 시까지 신속하게 공포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제19조
협력

19.1 전자상거래의 전 세계적 성격을 인정하며, 당사자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된 집단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사용과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 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 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9.2 제1항의 목적을 위한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개인 데이터의 보호
- 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온라인 소비

자 보호

-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 라. 전자 통신상 보안
- 마.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 바. 전자인증
- 사. 복합 운송을 포함한 국경 간 물류 서비스, 그리고 물류 서비스와 우편 서비스 간의 협력
- 아. 세관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의 이용을 포함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무역원활화, 그리고 데이터 교환과 제품 안전 리스크 경고와 같은 분야에서의 규제 협력, 그리고
- 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19.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다음을 위한 문의처를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통보 또는 협의 절차를 담당한다. 그리고
- 나.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다른 당사자의 합리적 질의에 응답한다.

제20조 개발

20.1 당사자들은 다음을 인정한다.

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나. 디지털 무역 관련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전자상거래의 포용적 성장을 증진하는 데 대한 전자상거래 규칙의 기여

20.2 당사자들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의 성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는 그들의 국민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 및 기반시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20.3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이행할 때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0.4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지지¹⁵는 이 협정 규정의 성격 및 적용범위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이 그러한 규정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0.5 당사자들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이 이 협정에 따른 특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지지를 통하여 기간 연장 또는 이행 능력의 습득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0.6 각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5년 이내의 이행 기간이 요구되는 이 협정 규정의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규정을 자체 지정할 수 있다.

20.7 각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제6항에 따라 자체 지정한 모든 규정에 대한 이행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한 각 당사자는 연장의 사유

¹⁵ 이 조의 목적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지지는 기술적, 재정적 또는 그 밖의 모든 상호 합의된 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및 그 이행을 완료하는 데 요구되는 관련 조치를 상세히 기재하여, 최초 이행 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연장을 통보한다.

20.8 선진국 당사자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양자적으로 또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에게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역량의 격차를 확인하도록 그들의 수요 평가를 수행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20.9 제8항에 따라 수행되거나 갱신된 모든 수요 평가의 결과는 제6항에 따른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에 의한 규정의 자체 지정 및 제7항에 따른 모든 이행 기간의 연장에 반영된다.

20.10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 당사자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그리고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수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러한 규정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지식의 제공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20.1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지를 제공하는 데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 가. 수혜 국가 및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체계와, 관련이 있고 적절한 경우 진행 중인 개혁과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고려한다.
- 나. 관련이 있고 적절한 경우, 지역 및 하위 지역의 도전과제를 다루고 지역 및 하위 지역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 다. 가능한 범위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개발할 때 민간 부문의 활동을 고려한다. 그리고

라. 이러한 지원의 최대한의 효과와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당사자들과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조정을 증진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 1) 조정은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개입의 긴밀한 조정을 통하여 지원 프로그램의 중첩 및 중복과 개혁 활동의 불일치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 2)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에 특별히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관련 글로벌 및 지역 무역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 조정 절차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과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제공에서 자신의 무역 및 개발 공무원 간의 내부 조정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20.12 제27조는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7년 동안 이 협정의 규정에 관한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분쟁의 해결에 적용되지 않는다.

20.13 제27조는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각각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이행 기간을 자체 지정하거나 연장한 이 협정의 규정에 관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분쟁의 해결에, 그 규정에 적용 가능한 이행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20.14 제12항에 언급된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조치에 관하여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기 전, 그리고 그 후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을 특히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와 관련된 제27조에 따른 사안을 제기할 때 적절한 자제를 행사한다.

20.15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및 지식의 제공에서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그리고 그 후 정기적으로, 자신의 기존 및 신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정보¹⁶를 논의하도록 노력한다. 이 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첫 번째 전

¹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제공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또는 지

담 세션 전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으로, 각 선진국 당사자는 관련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출한다.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받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제출물을 기존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이 표현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고자 한다.

20.16 자신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선언하는 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으로, 제15항에 명시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장된다.

20.17 위원회는 제15항 및 제16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국제기구의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와 함께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20.18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지원 및 지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그러한 지원 및 지지의 조정과 우선순위 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0.19 이 조의 목적상,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위하여 매년 최소 한 번의 전담 세션을 개최한다.

가. 각각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자체 지정되거나 연장된 이행 기간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또는 역량 강화 지원을 점검한다.

나. 이 협정 규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다.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 및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또는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지에 대한 설명, 나. 당사자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그러한 지원 또는 지지를 신청하거나 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 그러한 지원 또는 지지 수혜자의 목록

라. 당사자들의 관련 경험, 도전과제, 성공 및 정보의 공유를 촉진한다.

제6절

통신

제21조

통신

21.1 이 조 및 부속서의 목적상,

가.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1)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나.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 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 1)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2)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다.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21.2 각 당사자는 부속서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한다.^{17 18}

21.3 각 당사자는 자신의 통신 규제 당국이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금융 지분을 보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항은 당사자의 통신 규제 당국 외의 정부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1.4 각 당사자는 자신의 통신 규제 당국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법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을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게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21.5 각 당사자는 자신의 통신 규제 당국이 수행하는 기능을 쉽게 접근 가능하고 명확한 형태로 공개한다.

21.6 각 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의 할당이 경쟁 증진을 포함하여 공공 이익을 고려하는 개방적인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입찰 절차와 같은 시장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그러한 할당을 수행한다.

21.7 각 당사자는 자신의 통신 규제 당국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¹⁷ 당사자의 GATS 구체적 약속 양허표와 불합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 부속서는 각 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농어촌 지역 교환통신사업자는 경쟁 지역 교환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부속서 제2.2항에 명시된 의무로부터 당사자의 통신 규제 당국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면제될 수 있다. 농어촌 전화회사는 당사자의 통신 규제 당국에 의하여 그렇게 하도록 요구될 때까지 부속서 제2.2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경쟁 지역 교환통신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 부속서 제2.2항은 필수 설비를 지배하는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¹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 또는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들이 GATS에 따른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추가적인 구체적 약속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 통신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어떠한 필수 설비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도록 요구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 공중 통신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지배적 사업자가 필수 설비인 자신의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1.8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제7항에 규정된 요건에 관한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당사자의 통신 규제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가진다.

21.9 통신 규제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8항에 언급된 분쟁 해결 요청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개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통신 규제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분쟁에 관련된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한다.

21.10 제8항에 언급된 분쟁에 관련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는 당사자의 사법 당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제7절

예외

제22조

일반적 예외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와 그 주해 및 GATS 제14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3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1조 및 GATS 제14조의2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4조

건전성 조치

이 협정의 목적상,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 제2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개인 데이터 보호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당사자의 법이 이전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인 적용의 조건¹⁹에 따른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규정해야 한다.

제26조

토착민

26.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신의 영역 내의 토착민과의 법, 헌법 또는 조약상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토착민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자신이 여기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다른 당사자의 인(人)에 대한 자의

¹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적용의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수의 경제 운영자에게 수평적으로 적용되어 여러 가지 상황과 사례를 다루는, 객관적 용어로 이루어진 조건을 지칭한다.

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26.2 당사자 자신의 영역 내의 토착민과의 법, 헌법 또는 조약상 합의(그러한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해석은 제27조에 따른 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 제27조는 이 조에 적용된다.

제8절

제도적 장치 및 최종 규정

제27조

분쟁해결

27.1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 또는 GATS 제22조 및 제23조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7.2 분쟁해결양해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된 분쟁에 적용된다.

제28조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위원회

28.1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참여를 개방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필요에 따라 또는 이 협정에 의하여 상정된 대로 그러나 매년 1회 이상 회합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28.2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또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고, 당사자들에게 이 협정의 운영 또는 이행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기회를 부여한다.

28.3 위원회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부속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부속 기구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모든 부속 기구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28.4 위원회는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감독하고, 이에 대하여 그리고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과 효과에 대하여 매년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28.5 위원회는 제20.7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연장 통보에 유의하고, 그러한 통보의 대상이 되는 규정의 이행에 요구되는 관련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28.6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WTO 회원국은 위원회에 서면 통보를 제출함으로써 참관인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모든 WTO 참관인은 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의하여 참관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29조

수락 및 발효

29.1 WTO의 모든 회원국은 이 협정을 수락할 수 있다. 수락은 이 협정에 대한 수락서를 WTO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9.2 이 협정은 이를 수락한 WTO 회원국에 대하여, 45번째 수락서 기탁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²⁰ 그 후, 이 협정은 그 밖의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여, 그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30조

이행

²⁰ 이 조에 따른 수락의 계산 목적상, 유럽연합의 수락서는 WTO 회원국인 유럽연합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수락서로 계산된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그 발효일부터 이행한다. 제20조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그 조에 따라 이 협정을 이행한다.

제31조

유보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할 수 없다.

제32조

개정

32.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을 채택하고 당사자들의 수락을 위하여 제출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컨센서스로 이루어진다.

32.2 개정은 다음과 같이 발효한다.

가. 나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을 수락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3분의 2가 수락한 때, 그리고 그 후 각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수락한 때, 또는

나. 위원회가 컨센서스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결정한 개정의 경우, 당사자들의 3분의 2가 수락한 때,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제33조

탈퇴

33.1 모든 당사자는 WTO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 만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당사자는 제37조에 따라 그러한 통보를 받은 때, 위원회의 즉각적인 회의

를 요청할 수 있다.

33.2 이 협정의 당사자가 WTO 회원국임이 중단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WTO 회원국임이 중단되는 날에 유효하게 이 협정의 당사자인 것이 중단된다.

제34조

특정 당사자들 간 이 협정의 비적용

이 협정은 두 당사자들 간, 어느 한 당사자가 이 협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하는 시점에 그러한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35조

검토

35.1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주기적으로,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운영을 개선하고 당사자들이 직면한 무역 문제에 대하여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35.2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술의 진화하는 성격을 고려하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 세계적 규범 수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추가 협상에 문서 제 INF/ECOM/62/Rev.5호의 미해결 문제 또는 당사자들이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모든 미래 협상에서 예외, 분쟁해결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6조

사무국

이 협정은 WTO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제37조

기탁

37.1 이 협정은 WTO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7.2 WTO 사무총장은 각 당사자에게 다음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가. 이 협정 그리고 제32조에 따른 각 개정의 진정등본, 그리고

나. 제29조에 따른 각 수락 그리고 제33조에 따른 각 탈퇴의 통보

제38조

등록

이 협정은 국제연합헌장의 제10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2026년 3월 28일 야운데에서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한 부씩 작성하였고, 각 언어본은 정본이다.

부속서

이 부속서는 기본 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제 체계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다.

제1절 경쟁보장장치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금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1.2 보장장치

제1.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제2절 상호접속

2.1 이 절은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경우, 어느 한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에 적용된다.

2.2 상호접속의 보장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로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제공된다.
- 나.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된다, 그리고
- 다. 요청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할 것이 보장된다.

2.5 상호접속: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가. 언제든지, 또는

나.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후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이전에 수립되지 않은 한도에서, 이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제5절에 언급된 규제기관일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이의신청할 것이다.

제3절 보편적 서비스

모든 당사자는 자신이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 당사자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제4절 허가 기준의 공개

4.1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이 공개될 것이다.

가. 모든 허가 기준 및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허가의 조건

4.2 요청에 따라, 허가 거부 사유는 신청자에게 통지될 것이다.

제5절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모든 기본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다.

제6절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될 것이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않는다.

임시 이행 부속서

서문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4에 추가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기존의 노력에 주목하고,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이 협정을 WTO 협정이 수립한 제도적 틀에 추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 협정의 혜택을 신속하게 실현하기로 결의하고,

이행기간,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개별적이고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개발의 필요를 다룸으로써, 그들이 이 협정을 이행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며,

WTO 협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 협정에 대한 다른 WTO 회원국의 가입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절

부속서의 적용

1.1 이 부속서와 그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이 부속서의 규정과 이 협정의 다른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부속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이 WTO 협정에 추가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1.3 제4절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이 WTO 협정에 추가되는 날을 시작으로, 이 부속서는 적용이 중단된다.

제2절 임시분쟁해결장치

2.1 이 협정의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2 이 협정에서 제27조에 대한 각각의 언급은 제3절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제3절 임시분쟁해결

3.1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 또는 GATS 제22조 및 제2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3.2 DSU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기된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3.3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DSU에서 “적용대상협정” 또는 “적용대상협정들”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에 대한 언급으로 양해된다.

나. DSU에서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언급은 위원회에 대한 언급으로 양해된다.

다. 제3.4항에 언급된 부록의 것을 포함하여, 이 항 그리고 제3.4항 및 제3.5항에

서 “DSU”에 대한 언급은 제3.2항에 따라 이 부속서에 통합된 대로의 DSU에 대한 언급으로 양해된다. 그리고

라. DSU에서 “회원국들”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의 당사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양해된다.

3.4 DSU의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상소심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제3.5항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가 패널 보고서에 대하여 상소하려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상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에 의존한다.²¹ 이 부속서의 부록에 규정된 상소 중재 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

3.5 WTO 상소기구가 상소 심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위원회는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DSU 제17조에 따른 상소심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4절 경과조치

4.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WTO 협정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결정이, 그 추가일에 이 협정에 따라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DSU를 적용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2 그러한 조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경과조치가 부재한 경우, 이 협정을 WTO 협정에 추가하기 전에 이 협정에 따라 제기된 분쟁은 계속해서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된다.

²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정이 제3.5항에 따라 내려질 때까지, 어떠한 당사자도 DSU 제16조제4항에 따른 패널 보고서에 대한 상소 결정을 통보할 수 없다.

임시 이행 부속서의 부록 상소중재절차

제1절 일반 규정

1. 이 부록은 임시 이행 부속서 제3.4항에 따라 패널 보고서의 상소에 적용되는 상소 중재 절차를 규정한다. 이러한 상소 중재 절차는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분쟁의 목적상,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합의된 절차를 구성한다.²²
2. 이러한 상소 중재 절차는 상소 절차의 절차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함한 그 핵심적 특징을 유지하기 위하여, WTO DSU의 제17조에 따른 WTO 상소심의의 실체적이며 절차적인 측면에 기초한다.
3. 상소는 세 명의 중재인이 심리한다. 이러한 중재인들은 위원회가 컨센서스로 별도의 상설 중재인 명부²³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여 그 명부에서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문 제JOB/DSB/1/Add.12호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상설 중재인 명부에서 선정된다(적용 가능한 명부를 이하 “중재인 명부”라 한다). 특정 분쟁을 위한 중재인 명부에서의 선정은 순환 원칙을 포함하여, WTO DSU 제17조제1항 및 WTO 상소심의에 대한 작업절차 규칙 제6(2)호에 따라 WTO 상소기구의 부(部)를 구성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 및 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²⁴ WTO 사무총장은 분쟁의 당사자들과 제3자에게 선정의 결과를 통보한다. 중재인들은 의장을 선출한다. WTO 상소심의에 대한 작업절차 규칙 제3(2)호는 중재인들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4. 중재인 명부의 구성원은 WTO 분쟁해결 활동을 계속 숙지한다. 의사결정의 합치성과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재인 명부의 구성원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이 협정과 관

²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DSU 제25조제2항 두 번째 문장의 통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부록의 목적상, “WTO DSU”는 이 협정 제2조다호에서 정의된 분쟁해결양해를 말하며, “DSU”는 임시 이행 부속서 제3.2항에 따라 그 부속서에 통합된 WTO DSU를 말한다.

²³ 그러한 명부에 포함된 중재인들은 WTO DSU의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

²⁴ 그러나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중재인 명부의 구성원은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당사자의 2명의 국민이 동일한 사건에 종사할 수 없다.

런된 해석, 관행 및 절차 사안을 그들 간에 논의한다. 중재인들은 상소와 관련된 자신들의 결정과 그 질적 수준에 대하여 중재인들의 전적인 책임과 자유를 저해함이 없이, 그러한 결정을 중재인 명부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논의할 수 있다. 중재인 명부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따른 상소 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령한다.

5. 중재인들은 관련된 책임의 성격을 감안하여, 질적 수준과 독립성에 대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적절한 행정 및 법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특히, 중재인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인들은 패널위원을 위하여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인물 및 행정 단위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신의 업무의 실체에 관하여 중재인들에게만 책임을 진다.

제2절 중재절차

6. 패널 보고서가 이 협정 당사자들에게 회람된 후 그러나 위원회가 채택하기 전에, 제3자가 아닌 분쟁 당사자는 위원회에 상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위원회에 상소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상소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제16항을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가 자신의 상소 결정을 통보한 경우, 패널 보고서는 위원회의 채택을 위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7. 상소는 패널 보고서의 적용대상인 법적 쟁점과 패널에 의하여 전개된 법적 해석으로 제한된다. 중재인들은 패널의 법적 조사결과 및 결론을 유지, 수정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경우, 중재 판정은 DSU 제19조에 상정된 대로 권고를 포함한다. 상소되지 않은 패널의 조사결과는 중재인 자신의 조사결과와 함께 중재판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중재인들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문제만을 다룬다. 중재인들은 관할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정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분쟁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만을 다룬다.

9.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는 WTO DSU 규정 및 WTO 상소심의를 적용 가능한 그 밖의 규칙과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규율된다. 이는 특히 WTO 상소심의를 위한 작업절차와 그에 규정된 상소 일정, 그리고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위한 행동 규칙(WT/DSB/RC/1)을 포함한다.²⁵ 중재인들은 분쟁 당사자들과 협의 후, WTO 상소심의를 대한 작업절차 규칙 제16호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 WTO 상소심의에 대한 작업절차 및 그에 규정된 상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0. 중재인들은 상소통지 제출 후 90일 내에 판정을 내린다. 그러한 목적으로, 중재인들은 분쟁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와 의무 및 적법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페이지 제한, 시간 제한 및 기한 그리고 요구되는 심리의 기간 및 횟수에 관한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11. 90일의 기간 내에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재인들은 DSU 제11조에 따른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부족 주장에 기초한 청구의 배제와 같은 실체적 조치를 분쟁 당사자들에 또한 제안할 수 있다.²⁶

12. 중재인들의 제안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판정 제출을 위한 90일의 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13. 분쟁 당사자들은 최종적인 중재 판정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DSU 제25조제3항에 따라 판정은 위원회에 통보되나,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는다.

14. DSU 제10조제2항에 따라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위원회에 통보한 제3자는 중재인들에게 서면 입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WTO 상소심의를 대한 작업 절차 규칙 제24호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15. DSU 제25조제4항에 따라, DSU 제21조 및 제22조는 분쟁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16. 중재 중 언제라도 상소인 또는 그 밖의 상소인은 중재인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자신의 상소 또는 그 밖의 상소를 철회할 수 있고, 중재인들은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²⁷ 상소 또는

²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동 규칙 VIII의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가 중재인들에게 적용된다.

²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재인들의 제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제안된 실체적 조치에 동의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에 달려 있다. 관련 당사자가 제안된 실체적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건의 고려 또는 분쟁 당사자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²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DSU 제3조제6항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은 이 항의 목

그 밖의 장소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컨센서스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패널 보고서는 그러한 통보로부터 60일 내에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다. 장소 또는 그 밖의 장소가 철회된 시점에 장소 또는 그 밖의 장소가 남아 있는 경우, 중재는 계속된다.